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23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8호, 2025. 5. 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5. 9. 12.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,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유해성심사결과)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는 별표와 같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게재 생략

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([www.nics.me.go.kr](http://www.nics.me.go.kr)) 내 「알림소식>법령정보」에 게재되어 있음